

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견

의안 번호	38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유 잡종재산인 괴산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를 대부중인 병원 재단(은혜의료재단)에 매각하여 주민의료기회를 부여하고
- 보은경찰서 마로파출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교환 요청에 따라, 도유지 1필지와 국(경찰청)소유 3필지를 등가교환하기 위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 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결을 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재산의 취득

◀ 괴산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매각 ▶

- 소재지 :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-2
- 규 모 : 부지 3,678㎡(1,113평), 건물 2,569㎡(777평)
지하 1층, 지상 3층(6개과 72병상)
- 대장가격 : 893백만원

< 마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 >

○ 교환시기 : 2002. 12월중

○ 교환대상 재산

- 경찰청 3필지 948㎡ 87백만원 ⇔ 충청북도 1필지 3,228㎡ 69백만원

소유자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m)	재산가액 (천원)	사용상태
경찰청	충주시 용탄동	1093	도	354	23,364	내수면
	충주시 용탄동	1099-19	도	287	18,942	연구소부지
	청주시 송정동	211-6	대	307	44,515	나대지
충청북도	보은 마로 관기	603-96	잡	3,228	68,756	잡종지

○ 교환사유

- 마로파출소 이전부지 확보

- 내수면연구소 부지내 국가(경찰청)소유 재산의 도유재산화

3. 예산상황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재산취득	재산처분	교환취득	교환처분	비고
계		893,000	68,756	86,821	
괴산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매각		893,000			
마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			68,756	86,821	

4.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: 별첨

5. 관계법령 : 별첨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제78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

200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	당 초			변 경(증감)			합 계		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
취득	계	토지	4	620,121㎡	63,911,952	1	948㎡	86,821	5	621,069	63,998,773
		건물	4	30,877㎡	15,386,000				4	30,877㎡	15,386,000
		기타	1	1대	7,000,000				1	1대	7,000,000
	매입	토지	3	616,684㎡	63,066,450				3	616,684㎡	63,066,450
		건물	4	30,877㎡	15,386,000				4	30,877㎡	15,386,000
		기타	1	1대	7,000,000				1	1대	7,000,000
	교환	토지	1	3,437㎡	845,502	1	948㎡	86,821	2	4,385㎡	932,323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기타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처분	계	토지	1	11,345㎡	846,625	2	6,906㎡	231,756	3	18,251㎡	1,078,381
		건물				1	2,569㎡	730,000	1	2,569㎡	730,000
		기타									
	매각	토지				1	3,678㎡	163,000	1	3,678㎡	163,000
		건물				1	2,569㎡	730,000	1	2,569㎡	730,000
		기타									
	교환	토지	1	11,345㎡	846,625	1	3,228㎡	68,756	2	14,573㎡	915,381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기타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
2002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(7-3)

(단위 : m² 천원)

일련번호	재 산 표 시				교 환 대 상 수 량	추 정 가 액	교 환 시 기	교 환 사유	교 환 대상자	비 고		
	구분	지목	소재지	일단의 수량								
계	취득			948	948	86,821						
	처분			3,228	3,228	68,756						
1	토지	취득	도로	충주시 용탄동 1093외 2	948	948	86,821	2002. 12	마 로 파출소 부지	국 (경찰청)		
		처분	잡종지	보은 마로 관기 603-96	3,228	3,228	68,756					
	건물	취득										
		처분										
	기타	취득										
		처분										
	2	토지	취득									
			처분									
건물		취득										
		처분										
기타		취득										
		처분										

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(7-4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매 각 대 상 수 량	과 표 또 는 평가액	매각사유	매 수 희 망 자 주소,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				
계	토지	1 건	3,678㎡ (1,113평)	3,678㎡ (1,113평)	163,000		
	건물	1 건	2,569㎡ (777평)	2,569㎡ (777평)	730,000		
	기타						
1	토지	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-2	3,678㎡ (1,113평)	3,678㎡ (1,113평)	163,000	괴산지역 의료수혜	은 혜 의료재단
	건물	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-2	2,569㎡ (777평)	2,569㎡ (777평)	730,000		
	기타						
1	토지	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-2	3,678㎡ (1,113평)	3,678㎡ (1,113평)	163,000	괴산지역 의료수혜	은 혜 의료재단
	건물	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-2	2,569㎡ (777평)	2,569㎡ (777평)	730,000	"	"
	기타						
2	토지						
	건물						
	기타						

관 계 법 령 발 취

【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】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. 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
<p>제78조(공유재산심의회)①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</p> <p>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

【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】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2 ~ 5호 생략